

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5. 16 선고 2018가단50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8. 5. 9

판결 선고 2018. 5. 16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2000. 1. 12. 접수 제42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적용 법조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전재혁

별지